

1. 개정이유

동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모든 증권이 아니라, 자산유동화 계획에 의해 공시되고,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이 보증되는 수익유동화 증권(P-CBS)에 한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증권신고서 면제 대상 추가(안 제119조 제2항 5-1호)

- (신설)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자본시장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9조제2항 5-1호 “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
자산유동화 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
유동화수익증권”를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9조(법 제3편 제1장 적용제외 증권) ① (생략)	제119조(법 제3편 제1장 적용제외 증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18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. 1. ~ 5. (생략)	② 법 제118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5-1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 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금 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을 보증하 는 유동화수익증권
6. ~ 7. (생략)	6. ~ 7. (현행과 같음)